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도시계획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 270 호
(2001. 1. 17)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중 “6층이상의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을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20조 본문중 “건축물”을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하 고, 동조제2호중 “건축물의구조기준 등에관한규칙 제13조”를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 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을 제외한다)에는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 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개방되어 있는 등”을 “개방되어 있거나 내부에서 열이 발생함에 따라 연중 냉방의 필요성이 있는 등”으로 한다.

1. 차고 · 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22조 본문중 “제21조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을 “(건축물의 냉방설비)”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 제22조 · 별표 5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별표4)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제21조관련)

(단위 : W/m² · K, 팔호안은 단위 : Kcal/m² · h · °C)

건축물의 부위		지 역	중부지역 ¹⁾	남부지역 ²⁾	제 주 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47이하 (0.40)이하	0.58이하 (0.50)이하	0.76이하 (0.65)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64이하 (0.55)이하	0.81이하 (0.70)이하	1.10이하 (0.95)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9이하 (0.25)이하	0.35이하 (0.30)이하	0.41이하 (0.35)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41이하 (0.35)이하	0.52이하 (0.45)이하	0.58이하 (0.50)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비닥난방인 경우	0.35이하 (0.30)이하	0.41이하 (0.35)이하	0.47이하 (0.40)이하
		비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이하 (0.35)이하	0.47이하 (0.40)이하	0.52이하 (0.45)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비닥난방인 경우	0.52이하 (0.45)이하	0.58이하 (0.50)이하	0.64이하 (0.55)이하
		비닥난방이 아닌 경우	0.58이하 (0.50)이하	0.64이하 (0.55)이하	0.76이하 (0.65)이하
공동주택의 측벽			0.35이하 (0.30)이하	0.47이하 (0.40)이하	0.58이하 (0.50)이하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비닥난방인 경우		0.81이하 (0.70)이하	0.81이하 (0.70)이하	0.81이하 (0.70)이하
	그밖의 경우		1.16이하 (1.0)이하	1.16이하 (1.0)이하	1.16이하 (1.0)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3.84이하 (3.30)이하	4.19이하 (3.60)이하	5.23이하 (4.50)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5.47이하 (4.70)이하	6.05이하 (5.20)이하	7.56이하 (6.50)이하

1)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6층이상의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 건축물 ----- ----- -----
제13조(개별난방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제13조(개별난방설비) ①----- --- 공동주택 ----- -----

현 행	개 정 안
<p>적합하여야 한다.</p> <p>1. ~ 7. (생략) ② (생략)</p> <p>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뢰의 우려가 있는 <u>건축물</u>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u>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3조</u>의 규정에 의한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p> <p>3. ~ 6. (생략)</p> <p>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접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측벽 및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은 그 열관류율을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하거나, 별표 5에 의한 단열재로 시공할 것</p> <p>2. 온수온돌로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에 세대별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실바닥(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및 외기에 접하는 바닥을 제외한다)의 열관류율을 1.0이하로 하거나, 별표 5의 비고 2에 의한 단열재를 20밀리미터이상의 두께로 시공할 것</p> <p>3. 4. (생략)</p> <p><u>〈신설〉</u></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u>제1항</u>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제주도지방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p> <p>2.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내부가</p>	<p>-----</p> <p>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20조(피뢰설비) ----- ----- <u>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u>-----</p> <p>1. (현행과 같음)</p> <p>2. ----- ----- <u>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u>-----</p> <p>-----</p> <p>3. ~ 6. (현행과 같음)</p> <p>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 ----- ----- -----</p> <p>1. ----- ----- <u>비단,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u></p> <p><u>〈삭 제〉</u></p> <p>3. 4.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 (창호 및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을 제외한다)에는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한다.</u></p> <p>③ ----- <u>제1항 및 제2항</u>-----</p> <p>1. 차고 · 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p> <p>2. ----- ----- -----</p>

현 행	개 정 안
<p>항상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등 열손실방지의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제22조(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21조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제23조(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 ① · ② (생략)</p>	<p>----- 개방되어 있거나 내부에서 열이 발생함에 따라 연중 냉방의 필요성이 있는 등 -----</p> <p>제22조(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p> <p>-----</p> <p>-----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① · ② (현행과 같음)</p>

도시계획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7,111호
(2001.1.27)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원 ·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상업지역으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상업지역안의 대지에서의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도록 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건축법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도시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동조제3항”을 “동조제2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호 및 제2호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각각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로 한다.

별표 4 제2호차목 · 별표 5 제2호차목 · 별표 6 제2호차목 및 별표 18 제2호차목중 “주유소”를 각각 “주유소 · 석유판매소”로 한다.

별표 8 제1호바목 · 별표 9 제1호아목 · 별표 10 제1호차목 및 별표 11 제2호바목중 “숙박시설”을 각각 “숙박시설(공원 ·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8 제1호사목 · 별표 9 제1호자목 · 별표 10 제2호마목 및 별표 11 제2호사목중 “위락시설”을 각각 “위락

시설(공원 ·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7 제2호다목(2)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3 제2항”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